■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Formalin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50-00-0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용기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화학사고 예방	- 취급 또는 작업 시는 통풍이 잘 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고글형보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고무앞치마,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 고무나 가죽재질은 포름알데히드 증기나 액체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임. - 열이나 스파크,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발암성물질이므로 매우 주의할 것. - 작업장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말고, 금연할 것. - 저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할 것. - 밀폐된 장소는 진입 전에 반드시 환기 시킬 것.
	보관・저장	- 통풍이 잘 되는 18~38℃의 저장소에 밀폐보관 할 것. -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혼합저장하지 말 것.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산, 알칼리, 아민류, 산화제와 혼합위험성(incompatible)이 있으므로 격리하여 저장할 것. - 화재나 폭발위험성이 있으므로 열원, 알칼리, 스파크, 불꽃, 가연성물질, 점화원과 격리하여 저장할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